

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문

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
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 시의원 의정활동비
지급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.

□ 결정 사항

- 결 정 일 : 2024. 2. 23.(금)
- 참석위원 : 8명
- 심의결과

연도별	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	비 고
2024년	월 150만 원	
2025년		
2026년		

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

